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566

제출년월일 : 2014. 12. 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수정이유

○ "복지" 와 "문화예술" 의 융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문화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, 문화 향유 및 참여가 보장되는 선진 복지문화 행정을 위해

○ 당초 안전행정문화국에 편제하였던 문화예술과를 시민복지국으로 재편코자 하고, 이와 연계하여 해당 국(局) 명칭을 수정코자 함.

☐ 주요내용

○ **문화예술과 국(局) 재편과 연계하여 해당 국 명칭을 변경함.(안 제6조)**

- 안전행정문화국 → 안전행정국
- 시민복지국 → 복지문화국

○ **안전행정국에 편제하였던 문화예술과를 복지문화국에 편제하고, 문화예술과 분장사무도 국 편제에 맞게 조항을 정비함.(안 제7조, 제9조)**

- 안전행정국(6개) : 총무과, 안전사회지원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민원여권과, 정보통신과
- 복지문화국(8개) : 복지정책과,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, 사회복지과, 여성가족과, 보육정책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, 식품위생과

○ **국(局) 명칭 변경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수정함.**
(안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)

- 「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」 및 「안산시청장(葬)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중 "안전행정문화국장" 을 "안전행정국장" 으로 수정

☐ **수정조례안 : 붙임**

☐ **수정안 조문대비표 : 붙임**

☐ **입법예고 : 생략**
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중 “안전행정문화국” 을 “안전행정국” 으로, “시민복지국” 을 “복지문화국” 으로 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 중 “안전행정문화국” 을 “안전행정국” 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안전행정문화국” 을 “안전행정국” 으로, “문화예술과, 민원여권과” 를 “민원여권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안전행정문화국장” 을 “안전행정국장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삭제하며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안 제9조의 제목 중 “시민복지국” 을 “복지문화국” 으로 하고, 제1항 중 “시민복지국” 을 “복지문화국” 으로 , “보육정책과, 체육진흥과” 를 “보육정책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민복지국장” 을 “복지문화국장” 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문화·종교, 예술,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

안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“안전행정문화국장” 을 각각 “안전행정국장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·기획경제국·주민복지국·안전도시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.	제6조(국의 설치) ---------- ------안전행정문화국 ---- -----시민복지국·도시주택국 --------	제6조(국의 설치) ---------- ---------안전행정국----- -----복지문화국--------- -------
제7조(행정국에 두는 과) ① 행정국에 총무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평생교육과,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.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총무, 공무원 인사 및 조직·교육, 후생복지,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〈신 설〉 2. 자치행정, 선거 및 투표, 국제협력,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. 지출, 계약, 재산관리,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. 평생학습, 학교 교육 지원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. 민원, 여권,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. 정보화, 정보보호, 통신에 관한 사항	제7조(안전행정문화국--) ① 안전행정문화국에 총무과, 안전사회지원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문화예술과,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. ② 안전행정문화국장------- 1. ---------- 2. 안전총괄, 재난관리, 복구지원, 안전 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. ---------- 4. ---------- 5. 문화·종교, 예술,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6. ---------- 7. ----------	제7조(안전행정국-----)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, 안전사회지원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. ② 안전행정국장---------- 1. ---------- 2. 안전총괄, 재난관리, 복구지원, 안전 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. ---------- 4. ---------- 5. 〈삭 제〉 5. ---------- 6. ----------
제9조(주민복지국에 두는 과) ①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·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·사회복지과·여성가족과·보육정책과·일자리정책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.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~5. 〈생 략〉 6.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. 〈생 략〉	제9조(시민복지국--------) ① 시민복지국---------- ----------보육정책과·체육진흥과 ---------- ② 시민복지국장---------- 1~5. 〈현행과 같음〉 〈신 설〉 6.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7. 〈현행과 같음〉	제9조(복지문화국--------) ① 복지문화국---------- ----------보육정책과·문화예술과·체육진흥과 -------- ② 복지문화국장---------- 1~5. 〈개정안과 같음〉 6. 문화·종교, 예술,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7.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8. 〈개정안 제7호와 같음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부 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제2항 중 "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문화국장"으로 하고, "안전도시국장"을 "도시주택국장"으로 한다. ②「안산시청장(葬)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제3항 중 "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문화국장"으로, 본부장을 "본부장·원장"으로 하고, 제7조 제3항 중 "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문화국장"으로 한다.	부 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---------- "안전행정국장" ---------- ② ---------- "안전행정국장" ---------- ---------안전행정국장----------

등록번호	총무과-22449
등록일자	2014. 12. 15
결재일자	2014. 12. 15
공개구분	비공개(5,6)

주무관	조직교육계장	총무과장	행정국장	부시장	시장
한복수	이범열	박미라			
협 조	법무계장		정책기획과장		

[의견]

민선6기 조직개편 관련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계획

결재 시장

행 정 국
총 무 과

민선6기 조직개편 관련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계획

◇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제216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중 「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코자 함.

☞ 안 확정,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확정은 별도 결재 상신 없이 본 계획서 결재로 갈음함.

□ 관련근거

○ 안산시 의회 회의 규칙 제23조(의안·동의의 철회)

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□ 조직개편 관련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 : 3건

○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⇒ 수정안 제출 대상

○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○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□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○ 수정 조례안명 :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○ 수정이유

-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 모두에게 문화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, 문화 향유 및 참여가 보장되는 “문화예술”과 “복지”가 융합되는 선진 복지문화 행정을 위해
- 당초 “안전행정문화국”에 편제하였던 문화예술과를 “시민복지국”으로 재편코자 함.

○ 주요 수정내용

▸ **문화예술과 국(局) 재편과 연계하여 국 명칭을 변경함.(안 제6조)**

- 안전행정문화국 → 안전행정국 - 시민복지국 → 복지문화국

▸ **안전행정국에 편제하였던 문화예술과를 복지문화국에 편제하고, 문화예술과 분장사무도 국 편제에 맞게 조항을 정비함.(안 제7조, 제9조)**

- 안전행정국(6개) : 총무과, 안전사회지원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민원여권과, 정보통신과 ※ 5급 사업소(외국인주민센터) 별도
- 복지문화국(8개) : 복지정책과,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, 사회복지과, 여성가족과, 보육정책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, 식품위생과

▸ **국(局) 명칭 변경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수정함.**
(안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)

- 「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」 및 「안산시청장(葬)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"안전행정문화국장"을 "안전행정국장"으로 수정

○ **입법예고 : 생 략**

「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입법예고의 예외)
1. 당해 자치법규안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
□ 조례안 수정 외 조정 사항

○ **외국인주민센터 국(局) 재편 : 복지문화국 → 안전행정국**

⇒ 5급 사업소로 자치법규 개정 없이 "안전행정국"으로 편제

○ **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【별표2】 사업소의 장·구청장·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"문화예술과" 위임사무를 "세정과" 앞에서 "체육진흥과" 앞으로 편제 순서 조정

□ 추진일정

○ 조례안 수정 계획 방침 확정(안 확정,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 확정 포함)
---------- '14.12.15.

○ 조례규칙심의회 ---------- '14.12.16.

○ 수정 조례안 의회 제출 ---------- '14.12.17.

붙임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□ 수정이유

○ “복지” 와 “문화예술” 의 융합을 통해 주민 모두에게 문화적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, 문화 향유 및 참여가 보장되는 선진 복지문화 행정을 위해

○ 당초 안전행정문화국에 편제하였던 문화예술과를 시민복지국으로 재편코자 하고, 이와 연계하여 해당 국(局) 명칭을 수정코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문화예술과 국(局) 재편과 연계하여 해당 국 명칭을 변경함.(안 제6조)

- 안전행정문화국 → 안전행정국
- 시민복지국 → 복지문화국

○ 안전행정국에 편제하였던 문화예술과를 복지문화국에 편제하고, 문화예술과 분장사무도 국 편제에 맞게 조항을 정비함.(안 제7조, 제9조)

- 안전행정국(6개) : 총무과, 안전사회지원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민원여권과, 정보통신과 ※ 5급 사업소(외국인주민센터) 별도
- 복지문화국(8개) : 복지정책과,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, 사회복지과, 여성가족과, 보육정책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, 식품위생과

○ 국(局) 명칭 변경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 사항을 수정함.
(안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)

- 「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」 및 「안산시청장(葬)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“안전행정문화국장” 을 “안전행정국장” 으로 수정

□ 수정조례안 : 붙임

□ 수정안 조문대비표 : 붙임

□ 입법예고 : 생략
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 중 "안전행정문화국"을 "안전행정국"으로, "시민복지국"을 "복지문화국"으로 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 중 "안전행정문화국"을 "안전행정국"으로 하고, 제1항 중 "안전행정문화국"을 "안전행정국"으로, "문화예술과, 민원여권과"를 "민원여권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안전행정문화국장"을 "안전행정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삭제하며,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안 제9조의 제목 중 "시민복지국"을 "복지문화국"으로 하고, 제1항 중 "시민복지국"을 "복지문화국"으로 , "보육정책과, 체육진흥과"를 "보육정책과, 문화예술과, 체육진흥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시민복지국장"을 "복지문화국장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문화·종교, 예술,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

안 부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중 "안전행정문화국장"을 각각 "안전행정국장"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·기획경제국·주민복지국·안전도시국 및 환경교통국을 둔다.	제6조(국의 설치) ---------- ------안전행정문화국 ---- -----시민복지국·도시주택국 --------	제6조(국의 설치) ---------- ----------안전행정국----- -----복지문화국--------- -------
제7조(행정국에 두는 과) ① 행정국에 총무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평생교육과,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.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총무, 공무원 인사 및 조직·교육, 후생복지,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<신 설> 2. 자치행정, 선거 및 투표, 국제협력,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. 지출, 계약, 재산관리,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4. 평생학습, 학교 교육 지원 및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5. 민원, 여권,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. 정보화, 정보보호, 통신에 관한 사항	제7조(안전행정문화국--) ① 안전행정문화국에 총무과, 안전사회지원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문화예술과,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. ② 안전행정문화국장------- -- 1. ---------- --- 2. 안전총괄, 재난관리, 복구지원, 안전 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. ---------- ---------- 4. ---------- ---- 5. 문화·종교, 예술,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6. ---------- ---- 7. ---------- -----	제7조(안전행정국-----) ① 안전행정국에 총무과, 안전사회지원과, 자치행정과, 회계과, 민원여권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. ② 안전행정국장---------- --- 1. ---------- ---------- ----- 2. 안전총괄, 재난관리, 복구지원, 안전 점검 및 민방위 등에 관한 사항 3. ---------- ---- 4. ---------- ---- 5. <삭 제> 5. ---------- ----- 6. ---------- ----
제9조(주민복지국에 두는 과) ① 주민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·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·사회복지과·여성가족과·보육정책과·일자리정책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. ② 주민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~5. <생 략> 6. 일자리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. <생 략>	제9조(시민복지국--------) ① 시민복지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보육정책과·체육진흥과 ---------- -- ② 시민복지국장---------- ----- 1~5. <현행과 같음> <신 설> 6.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7. <현행과 같음>	제9조(복지문화국--------) ① 복지문화국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보육정책과·문화예술과·체육진흥과 -------- -- ② 복지문화국장---------- ---- 1~5. <현행과 같음> 6. 문화·종교, 예술, 문화시설 등에 관한 사항 7.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8. <현행 제7호와 같음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	부 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「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제2항 중 "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문화국장"으로 하고, "안전도시국장"을 "도시주택국장"으로 한다. ②「안산시청장(葬)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 제3항 중 "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문화국장"으로, 본부장을 "본부장·원장"으로 하고, 제7조 제3항 중 "행정국장"을 "안전행정문화국장"으로 한다.	부 칙 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---------- "안전행정국장" ---------- ② ---------- "안전행정국장" ---------- ---------안전행정국장----------